

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관광진흥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8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

2. 개정이유

가. 관광지 및 관광시설 이용객 등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에 촉진하고,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화폐 지급 근거 신설(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)

나.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본문과의 호응을 고려하여 문구 정비(안 제7조 전반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8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 · 주소 · 생년월일 · 연락처 · 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관광과 관광정책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, 파주시청 관광과(우 10930)

○ 전화 : 031)940-4361 / Fax 031)940-4369 / 이메일 geoinfor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